

[전공인정 관련 규정 발췌]

I. 전과: 「전과에 관한 규정」 제7조(학점인정) 제2항~제3항

- ② 기 취득한 전출 학과의 전공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- ③ 전출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이 전입 학과의 과목과 동일한 경우 전입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II. 복수전공: 「복수전공에 관한 규정」 제6조(이수학점) 제2항, 제7조(복수전공의 취소) 제2항 「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」 제5조(부전공의 취소) 제2항

- 「복수전공에 관한 규정」 제6조(이수학점) 제2항
- ② **복수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(전공)와 동일한 과목일 경우 복수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**
- 「복수전공에 관한 규정」 제7조(복수전공의 취소) 제2항
- ② 복수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,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부전공을 신청한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「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」 제5조(부전공의 취소) 제2항
- ② 부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복수전공을 신청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III. 부전공: 「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」 제4조(이수학점) 제2항~제4항, 제5조(부전공의 취소) 제2항, 「복수전공에 관한 규정」 제7조(복수전공의 취소) 제2항

- 「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」 제4조(이수학점)
- ②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.
- ③ 부전공을 중도에 복수전공으로 전환할 경우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단, 전공이 같은 경우에 한한다.
- ④ **부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부전공과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**
- 「부전공에 이수에 관한 규정」 제5조(부전공의 취소) 제2항
- ② 부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복수전공을 신청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「복수전공에 관한 규정」 제7조(복수전공의 취소) 제2항
- ② 복수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,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 단, 부전공을 신청한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